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32

발의연월일: 2024. 6. 20.

발 의 자: 송옥주 · 민병덕 · 이연희

백승아 • 부승찬 • 한정애

문진석 • 이수진 • 이병진

염태영 • 이원택 • 서삼석

박 정 · 이재관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의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과금 부과처분 시 심의 대상 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으로 징계 위원회를 구성하되, 장교가 1명 이상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징계위원회의 위원 수가 적고 전부 군인으로 구성하고 있어 객관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징계위원회 위원 수를 확대하고,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 구성 시 반드시 민간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하여 군인의 징계처분 등에 대한 객관적인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제2항 등).

법률 제 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2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건을 다루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1.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 2. 군인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 ③ 제2항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장교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징계처분등의 심 의 대상자가 병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8조의2(징계위원회) ① (생	제58조의2(징계위원회) ① (현행		
략)	과 같음)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등의	② 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장교가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	는 사건을 다루는 징계위원회		
만,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	를 구성할 때에는 제2호에 해		
가 병인 경우에는 부사관만으	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		
로도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되어야 한다.		
있다.	1. 징계처분등의 심의 대상자보		
	다 선임인 장교・준사관 또는		
	<u>부사관</u>		
	2. 군인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u>사람</u>		
<u> <신 설></u>	③ 제2항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 제2항제1호에 해당		
	하는 사람 중 장교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징계처		
	분등의 심의 대상자가 병인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u><신 설></u>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